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16 선고 2022가단131505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우종태, 이양원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관, 박준희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7. 5.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4,557,996원과 그 중 55,8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그 중 71,791,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186,966,996원에 대하여는 2023.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과 선급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C아파트의 입주인 178세대로부터 타일바닥 교체 공사 등을 수주받은 후, 2022. 9. 2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22. 10. 20., 준공일 2022. 12. 20., 계약금액 388,000,000원(부가가치세 38,800,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자재발주시 자재비 30% 선지급조건

- 타일자재 금액 : 109,970,000원 30% 32,991,000원 선지급 조건

(2) 계약시 공급가액 : 388,000,000원 10% 38,800,000원 선지급 조건

나. 기성부분금

(1) 타일자재 현장 납품전 70% 지급조건

(2) 타일시공 50%완료시 40% 지급조건

(3) 타일시공 시공완료시 잔금50% 일주일 이내 지급 조건

(4) 지급방법 : 현금100%

제23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22. 9. 2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타일자재대금으로 32,991,000원을 지급하고, 2022. 10. 9. 공사비 선급금으로 38,800,000원 등 합계 71,791,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착공 및 중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각 세대에 설치할 타일 품번을 교부받아 타일을 발주하고, 2022. 9. 2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설사의 요청으로 공사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2022. 10. 24. 다시 공사를 재개하였다.

2) 2022. 10. 25. 피고가 시공을 완료한 세대의 입주민으로부터 시공된 타일과 위 입주세대가 지정한 타일이 상이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확인 결과 피고가 주문한 타일이 원고가 교부한 타일 품번과는 일치하나 각 세대가 지정한 타일과는 색상 등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이에 원고의 대표자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22. 10. 28. 소외 E에게 이 사건 타일공사의 재시공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한편, 2022. 10. 29. 피고의 대표자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즉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과 지급된 공사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F은 정산을 요구하며 그 무렵부터 공사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4) 원고는 2022. 10.경 소외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주었고, G는 2022. 11. 2.부터 2022. 12. 17.까지 이 사건 타일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공사 중단 이후의 정황

1) F은 2022. 10. 31. D에게 '타일자재는 서로 협력해서 처리하고, 저한테 책임전가는 안했으면 합니다. 제발 욕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답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23. 11.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7,591,000원을 선지급하였으나 2022. 10. 31.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22. 11. 1. 'F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D로부터 타일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71,79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F을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2023. 1. 25.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라. H 공사계약 및 선급금 등의 지급

1) 원고는 2022. 7.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2022. 7. 4. 공사대금 선급금 및 부가가치세 선급조로 55,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H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 을제10, 14, 15호증, 을제2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이 중단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71,791,000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타일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공사대금 186,966,99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해제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약금 선급금 및 자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세대가 지정한 타일과 다른 타일로 시공을 마친 것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된 공사착공일 이전에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타일발주 잘못으로 타일 재발주 및 공사를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시정을 요구하자 피고가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계약해제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22. 11. 1.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그 이행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대가 지정한 타일과 피고가 주문한 타일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람에 타일 재발주 및 재시공 문제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타일주문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는 원고가 교부한 타일 품번에 따라 타일을 주문한 점, ②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각 세대에 설치할 주식회사 J의 타일 품번과 함께 샘플타일을 제공하여 주었고, 위 회사는 각 대리점마다 타일 품번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피고가 샘플을 확인하여 샘플에 맞는 타일을 주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타일 회사의 대리점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각 대리점마다 상이한 타일 품번을 적용하여 타일을 판매한다는 주장은 통상의 거래관념과 상식에 반하여 이를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각 세대가 지정한 타일과 다른 타일이 제공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세대원들이 지정한 회사의 타일이 아니라 주식회사 J의 타일을 지정구매하게 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일주문에 있어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 사건 타일주문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로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피고와 공사대금의 정산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제3자에게 승계시공하게 하고, 피고의 대표자를 형사고소까지 한 원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도급인은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도급인이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원고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의 완성전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에 관한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해제를 인정할 경우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와 달리 피고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오히려 민법 제673조에 따라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바, 원고가 이러한 법률효과의 적용을 전제로 위 계약해지 주장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공사대금반환을 주장하는 것 외에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이 피고의 기성율을 초과함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이나 기성율 등에 대한 입증은 하고 있지 않다).

3. H 관련 공사대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

원고는 H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로 공사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580만 원을 선지급하여 주었던 것인데, 피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당사자 사이에서 H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도급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으로서 구두계약으로 성립가능하고, 계약서 작성이 그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선급하여 주었고,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공사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H 공사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H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58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계약의 임의해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피고가 H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점,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당사자가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H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어떤 비용을 투입하였다거나 공사의 유효를 전제로 후속 법률행위를 행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다른 법률상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선급금 5,58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5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2.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재향